

# 사례분석을 통한 경호 전문성 제고\*

## Professionalism raising of the escort which leads an instance analysis

유형창\*\*

### <목 차>

I. 서론	III. 각국 요인암살 및 위해사건의 경호 분석적 평가
II. 테러와 경호기법 및 원칙	IV. 결론 및 제언

### <요 약>

본 논문에서 분석자료로 소개되는 요인암살 및 위해사건은 3가지인 바 미국의 레이건대통령 저격사건, 한국의 박정희대통령 저격사건, 이스라엘의 라빈수상 암살사건이다.

1981년 레이건대통령이 워싱턴의 힐튼호텔 앞에서 연설을 마치고 백악관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차량에 탑승하기 직전, 범인 힝클리가 33구경 리볼버 권총으로 대통령의 가슴과 공보비서 및 경호원 등을 실탄6발로 저격한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한국에서는 제일동포 2세 문세광이 1974년 서울 장충동 소재 국립극장에서 거행된 29주년 8.15광복절 기념식 행사장에서 박정희대통령을 시해하려다 실패하고 육영수여사를 저격하여, 우측두부에 총상을 입혀 사망케 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스라엘 라빈수상은 1995년 이스라엘 텔아비브 시청 앞에서 중동평화정착 계획지지 군중대회를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려는 순간 범인 이갈 아미르가 쏜 총탄에 피격되어 사망하였다.

이러한 사건들은 경호분석 측면에서 큰 교훈을 남겼으며, 경호기관에서 교육훈련시 활용되고 있는 소재들이다. 한국에서도 대통령실 경호처는 물론이고, 전국 경호관련학과에서 ‘경호분석학’, ‘경호실무’, ‘경호방법론’ 등의 교과목에 주요한 위해사건모델로 다루어지고 있다.

경호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호기법은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더불어 정치·사회·문화와의 제반관계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호분석적 측면에서 주요 모델로 다루어지고 있는 이 사건들을 소개 수준을 넘어, 경호기법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재평가하고자

\* 이 연구 결과물은 2008학년도 경남대학교 신진교수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경남대학교 법정대학 경호비서학부 교수/경호안전학 박사

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특히 미국 레이건대통령 암살미수사건은 현장의 근접경호원들이 총성 이후 10초 만에 경호 대상자인 레이건 대통령을 사건 현장에서 즉시 대피시키는 신속성을 발휘한 부분에 있어서 1963년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과 비교해 볼 때 경호원들의 행동이 상당히 전문화 되었다는 긍정적 성공사례로 평가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제기된 행사장 외곽 취재구역 근무요원의 방심, 수시사용 행사장에 대한 안일한 자세, 무선교신 혼란과 무선보안 누설위험, 의무기록철 비치 미비, 위해인물 프로파일링 미비, 병원 및 응급실 사전 미확보 등의 문제점을 발생시켰음을 부인할 수 없다.

주제어 : 경호, 암살, 레이건, 박정희, 라빈, 경호분석, 경호기법

## I. 서 론

테러리즘은 21세기 국가안보에 있어 중대한 위협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2001년 미국의 심장부를 강타한 9·11 테러는 인류문명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세계적 초강대국 미국조차도 테러리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크나큰 교훈을 얻게 되었다.

급변하는 세계 안보환경 그리고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암살사례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이고 현실에 맞는 실효적 입법과 관련법들의 개정이 미흡한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또한 여러 가지 제약들은 필요 충분한 경호행위를 제한할 수 있고, 치밀한 경호기법이 노출되어 차후 경호임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

경호는 단순히 경호기법상의 문제만이 아니며, 사회의 제반관계, 그 중에서도 특히 정치적·문화적 측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치적 제반 관계는 그 자체로 경호환경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경호환경을 형성·변경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

정치인 또는 국가의 주요직에 있는 인물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에서 요인들을 관리하는데 여러 직책의 요인 중에 국가적 중대 의사결정권을 가진 요인은 국가체제유지의 중요한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국가요인은 국가위기 발생시 최고의 의사결정권자로 국가안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이재진, 2001).

대통령과 수상 등은 국가의 최고 권력자로서 국가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행정의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신진우, 2005).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미국과 한국에서 대통령저격사건들이 발생하였고 이스라엘 라빈 수상 암살사건의 발생으로 정치인들에 대한 경호가 단순한 국가요인경호의 범주를 넘어 국가안보 및 정치·경제·사회안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후 이 사건들은 경호분석 측면에서도 큰 교훈을 남겼으며, 여러 경호기관에서 교육훈련시 활용되고 있는 주요 소재들이며, 특히 레이건대통령 및 박정희대통령 암살미수사건은 한국에서 대통령실 경호처(전 대통령경호실)는 물론이고, 1995년 경호관련학과가 신설된 이후 전국 50여개 경호학과에서 ‘경호분석학’, ‘경호실무’, ‘경호방법론’ 등의 교과목에 주요한 위해사건모델로 다루어지고 있다.

미국에서의 대통령 암살미수사건은 긍정적 측면에서 일부 소개되고 있으나, 경호원칙이나 경호기법에 따른 체계적이고 세밀한 경호분석이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태이고, 또한 부정적 측면은 다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 분야에 대한 심층적·종합적인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경호학에서 경호분석적 측면에서 주요 모델로 다루어지고 있는 이 사건들을 경호기법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재평가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서 단행본과 학위논문, 학술지 및 연구논문, 일간지, 관련기관에서 발행하는 자료 등 레이건대통령 및 경호관련 문헌을 통하여 사건의 배경, 경호의 원칙과 기법, 테러리즘 등에 대한 고찰을 하였고, 연구의 보충을 위해 경호관계기관 및 민간경호업체 실무자의 의견도 참고하였다.

## II. 테러와 경호기법 및 원칙

### 1. 테러와 경호

#### 1) 테러의 개념

일반적으로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테러란 “특정한 위협이나 공포로 인해 모든 인간들이 심적으로 느끼게 되는 극단적인 두려움의 근원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테러리즘은 조직적인 폭력을 사용함으로써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다. 특히, 정치적 무기나 정책으로써 폭력을 사용하는 경우를 지칭한다. 말하자면 테러리즘은 폭력의 조직적, 의도적 이용으로 강압적이며, 희생자 혹은 희생자와 연관된 모든 사람, 그리고 대중들의 의지를 이용하기 위한 목적 지향적인 행위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강제, 협박, 위협을 통해 폭력을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최진태, 2006). 또한 테러를 조직적인 살해 및 파괴 그리고 살해와 파괴에 대한 협박을 수단으로 개인, 단체·특정공동체, 정부를 대상으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매개체로 테러 집단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Paul Wilkinson, 1986), 기존의 권위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개인이나 집단에 의한 폭력의 사용·위협이며 또한 이러한 테러행위는 정치적 요구에 순응하도록 강요할 목적으로 즉각적인 희생자보다는 국가나 집단에 극단적인 공포·두려움을 유발시킬 목적으로 수행되는 행위라고도 정의할 수 있다(Grant Wardlaw, 1994).

법적 규정개념으로서는 일반시민을 협박 또는 강요하거나 정부정책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자행하는 연방 또는 주 형법에 규정된 범죄행위로서 사람의 생명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폭력행위로 정의하며(미국, PATRIOT Act of 2001, 개정법률), 협박 또는 강요로서 정부의 조치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계획적으로 항공기, 공항·군사·정부시설, 주요인사 등에

대한 대상 공격, 테러범 지원·은닉 등 열거된 범죄행위, 국제테러조직으로부터 훈련을 받은 경우와 테러지원목적 마약밀매행위를 테러범죄로 규정하고 있기도 한다(연방테러범죄, 제 808조 및 개정법률 제112조, 18 U.S.C. 2332b).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에서는 테러를 정치적·사회적 목적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이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상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행하는 불법적 폭력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요컨대 테러란 비국가 행위자들이 정치적 또는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표적에 대하여 직접적 폭력행사를 하거나 위협함으로써 공중에 대한 심리적 상징적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폭력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 2) 테러와 경호와의 관계

테러로부터 VIP(요인)보호는 오랜 역사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테러문제는 경호에 있어서 가장 전형적인 위해요인으로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으며 21세기에 들어서면서 테러가 VIP(요인)의 안전한 신변보호문제에 있어 가장 빈번하면서 가장 위협적인 요소로 등장했다. 결국 테러와 경호는 문제해결에 있어 밀접함과 대립성의 상관관계에 놓여 있음이 전제된다.

양자간 상관관계에 놓여있음을 간략히 살펴보면 테러는 먼저 오늘날 학문적 영역에서 종합적인 지위에서 주요 내용으로 자리매김 했다는 점이다. 즉 테러는 경호학, 범죄학, 경호·경비정보학, 법학 및 정책학, 안전관리학 혹은 위기관리학, 소방방재학 등의 주요 내용으로 포함된 점이다.

공경호든 사경호든 테러로부터의 신변보호가 공통적 핵심영역이 된 것에서 대테러 개념이 경호학의 학문영역에 속하게 되었고, 테러가 인류의 인권을 침해하고 파괴하는 중대 범죄로서 특수범죄인 점에서 범죄학의 주요 분야가 되고 또한 경호학의 영역은 또한 범죄학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테러공격에 대해 사전 예방활동이 최선의 방책이라면 테러도 경호·경비정보학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사전예방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정보라고 할 수 있어 미국, 영국같은 선진국에선 테러문제의 극복차원에서 정보기구를 확대개편하고, 정보학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시행하고 있다.

테러대응에는 법률적 토대가 필요하고 이를 근거로 대테러 정책입안과 세부적 정책대안의 수립·집행·평가과정이 형성되는 점에서 테러가 법학 및 정책학의 한 분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경호·경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을 지키는 것이며, 테러공격발생에 대해 사전예방에 실패할 경우 신속한 수습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관리 및 위기관리가 요구되는 점에서 테러가 안전관리학 혹은 위기관리학에서 연구의

일부가 되기도 한다. 또한 테러사건발생시 대부분의 경우 소방방재기관의 개입을 요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테러가 소방방재학에서도 주요 내용으로 다뤄진다.

또한 테러가 산업적으로도 긴밀한 연관을 맺는다는 점이다.

테러학의 산업적 발전전망은 고무적이다. 현대의 테러가 민간시설에 집중되면서 민간경호·경비시장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 되어 대테러 개념이 포함된 민간경호·경비가 절대적임을 피할 수 없게 됨으로써 테러가 민간경호·경비의 핵심분야가 되었다. 우리나라 경우에 법개정을 통해 민간경비지도사, 특수경비원 등의 양성교육에서 대테러학이 포함되어 테러대응기법 등이 교육내용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테러학이 민간경호·경비의 중요분야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 테러집단의 첨단적 무기무장에 대응하는 경호·경비장비의 개발 및 발전에 많은 연구개발비가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테러가 경호·경비장비론 분야의 주요 의제가 되어 첨단적인 경호·경비장비의 확보로서 테러조직의 전략 및 전술에 적극적 대응을 행하고 있다. 또한 테러학이 경호·경비학의 학문적 구축뿐만 아니라 경호·경비산업계에 있어서도 화두가 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테러학을 포함한 경호·경비전공자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경우도 경찰특공대, 해양경찰특공대, 외교통상부, 국정원 등에서 대테러 전문가를 채용함으로써 테러학이 경호·경비학의 주요 영역으로 등장했음을 의미하고 있다.

이상에서 여러 각도로 살펴본대로 테러와 경호분야는 상호간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경호관련연구에서 테러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심층적이고 폭넓은 연구를 위해 타당하고 합리적임을 알 수 있다.

## 2. 경호개념과 기법 및 원칙

### 1) 경호개념

경호라는 개념이 도입되고 전문경호기관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00년대부터라고 볼 수 있다. 사회가 다변화되고 범죄수법이 다양화, 지능화됨에 따라 경호의 대상자들이 위해를 당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이르자 각국별로 전문적 경호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그 요구에 따라 각자 그 나라의 경호환경에 적합한 경호기법과 경호조직이 탄생하게 되었다(이상철, 2008).

경호는 일반적으로 모든 가용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경호대상자에게 가해질 수 있는 직·간접적인 위해요인을 사전에 방지 및 제거함은 물론, 근접에서 경호대상자의 신변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반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경호개념에는 좁게는 검색 및 검측활동, 근접경호 활동, 즉각 조치활동을 포함하는 호위작용과, 넓게는 이에 더하여 특정지역을 경계·순찰·방비하는 경비작용을 통칭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급속히 변화되는 각종 위해 상황과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가능해진 세계화·정보화 시대에서 위해요인들은 사회구조적으로나 국제정치적으로 밀접한 상호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경호개념 또한 보다 넓은 의미의 시큐리티 개념과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 의미에서 경호개념은 학문적 측면에서의 접근한 개념으로 경호란 모든 가용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경호대상자에게 가해질 수 있는 직·간접적인 위해 및 위협요인을 사전에 방지 및 제거함은 물론 근접에서 경호대상자의 신변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반 동이랄 수 있다. 형식적 의미에서 경호개념은 현실적인 경호기관을 기준으로 하여 정립된 개념으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에 의하면 “경호”라 함은 경호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 또는 제거하고, 특정한 지역을 경계·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활동을 말한다.

경호의 최고 목적은 경호대상자의 보호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호대상자에 대한 위협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호대상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경호의 기능은 사전예방작용과 위해에 대한 대응작용이다. 사전예방경호를 통하여 위협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잠재적인 위해를 차단하거나 위해자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우발상황 발생시 위협을 최소화하는 대응작용이다. 사전예방작용은 위협요인을 단계별로 관리하고,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에 중점을 두며, 대응작용은 위협에 조직적으로 대응하여 경호대상자를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피함으로써 안전하게 보호함은 물론 피해를 최소화하며, 기능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 2) 경호기법 및 원칙

경호의 특성상 위해상황은 사전통보나 인지된 환경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불시에 이루어지며 예측 가능한 요소가 제한적이다. 그러나 전문적인 각종 수단과 고도의 훈련된 각종 수단과 도구를 사용하여 이를 예측하여 사전에 차단하고 방지하는 전문성을 부단하게 발굴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 방법 중 가장 중요한 방법은 고도의 몸을 수단으로 한 경호기법인 것이다.

경호의 원리와 기법에는 일반원칙과 특별원칙, 예방경호의 원칙, 자연방벽효과의 원리, 주의력효과와 대응효과의 원리, 근접경호기법, 우발상황 발생 시 SCE원칙(경고·방호·대피), 측수거리확보의 원칙, 체위확장의 원칙 등 많은 경호기법들이 있다. 경호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에 철저한 현장답사와 위해 및 취약요소분석, 위해요소제거활동, 그리고 해당지역에 대한 완벽한 확보와 출입통제대책이 망라된 예방적 활동이 가장 우선적으로 전체

되어져야 한다.

경호는 경호대상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임무수행을 위해서는 적용되어야 할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호의 여러 원칙 중 일반원칙과 특별원칙을 제시한다.

경호의 일반원칙은 3중경호(중첩경호)의 원칙, 두뇌경호의 원칙, 방어경호의 원칙, 은밀경호의 원칙으로 제시된다. 3중경호(중첩경호)의 원칙은 경호대상자를 중심으로 내부, 내곽, 외곽으로 구분하여 3중의 안전구역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는 원칙이다. 근접경호, 중간경호, 외곽경호를 거시적이고 철학적인 이론으로 정립한 것은 영국 런던 경시청 경호국이며, 이를 실제 적용면에서 기법으로 요약한 경호기관은 미국의 비밀경호국이다(김두현, 2004).

경호를 실시함에 있어서 방패막의 역할을 수행하는 신체도 중요하지만 신체를 조절하고 통제하는 두뇌의 역할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두뇌경호의 원칙이다. 방어경호의 원칙은 경호임무 수행시 공격이 아닌 방어의 개념으로서, 경호대상자에게 우발상황이 발생할 경우 경호요원은 경호대상자를 우선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무기사용 등 공격적인 행동보다는 방어 위주의 엄호행동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은밀경호의 원칙은 경호임무 수행시 통상 정적인 상황에서 경호대상자의 심신에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경호본연의 임무가 수행 되어져야한다는 것이다.

경호의 특별원칙은 자기담당구역 책임의 원칙, 목표물 보존의 원칙,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의 원칙, 자기희생의 원칙을 말한다. 자기담당구역 책임의 원칙은 경호원이 자기가 맡은 자기 담당구역 내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사태에 대해서도 자신만이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목표물 보존의 원칙은 경호의 목표물인 경호대상자에게 피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자들로부터 이격시켜 놓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의 원칙은 경호대상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단일통로를 설정함으로써 근무운용의 원활함과 안전의 확보를 위한 대비책이 제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기희생의 원칙이란 경호대상자는 어떠한 상황 하에서라도 평소의 반복된 훈련과 고강도의 정신력으로 단련된 근무자의 조건반사적 희생을 통하여 보호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위해기도 발생시 경호대상자의 안전은 예리한 경계심과 냉철한 판단력과 즉각적이고도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기 위한 충분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호원들에 의해서 보장될 수 있다. 또한 완벽한 신변보호를 위해서는 경호원 개별 경호기법의 연마와 우발상황에 대한 상황발생시 행동절차에 대한 자기암시가 구상되어짐으로서 경호팀단위의 경호기법으로 계획되고 숙달되어지게 될 수 있다.



### Ⅲ. 각국 요인 암살 및 위해사건의 경호분석적 평가

#### 1. 미국 레이건대통령 암살미수사건 분석

#####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1981년 3월 30일 월요일 미국 워싱턴 D.C 힐튼호텔 앞 노상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레이건대통령이 힐튼호텔 앞에서 건설노조 대회의 연설을 마치고 대통령 전용출입구를 통하여 호텔 앞 노상으로 나와 환영하던 군중에게 답례를 하던 순간, 호텔 앞 기자석 앞에서 잠입하여 있던 당시 25세였던 범인 존 힝클리(John Hinckley, Junior)가 3m 거리에서 22구경 리볼버 권총으로 레이건 대통령을 향하여 2초 동안 6발을 발사하였다.

총성과 동시에 수행과장 제리파(Jerry Parr)는 레이건 대통령을 리무진 뒷좌석으로 밀어 넣으며 그 위를 자신의 몸으로 덮었고, 근무조장인 사덕 경호원은 제리파와 레이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총성이 나는 쪽으로 체위를 확장시켜 육탄으로 방어하였다. 이 순간 다른 경호원은 범인 존 힝클리를 잡아 땅에 넘어뜨려 체포하였다. 대통령은 부상을 입었고 즉시 조지워싱턴 대학병원으로 응급 호송하여 의료진에게 수술을 받게 하였다. 이 사건에서 레이건 대통령 차량은 최초 총성 이후 10초 만에 현장을 이탈하였고, 3분 만에 병원에 도착하였다. 저격사건으로 인해 경호원이었던 팀 매카시(Tim Mccathy)가 사망하였다.

당시 존 힝클리는 범행 이유에 대해 ‘당시 유명 영화배우였던 조디 포스터(Alicia Christian Foster)<sup>1)</sup>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였다’고 범행 이유를 자백하였고,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외 3명의 피격사건 용의자로 재판했지만, 정신병을 앓고 있었던 사실이 정상참작되어 1982년 6월 21일 워싱턴 배심원단의 무죄판결을 받았다. 존 힝클리 주니어는 세인트 엘리자베스 정신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다.

##### 2) 사건의 배경

###### (1) 범행동기

범인 존 힝클리는 영화배우 조디 포스터에 대한 집착이 강했다. 1976년 마틴 스코시즈

1) 조디 포스터(Alicia Christian Foster)는 1962년 11월 미국에서 태어나 1969년 드라마 ‘The Courtship of Eddie’s Father’로 데뷔한 이래 20여년간 각종 상을 수상한 영화배우이자 영화감독이다.

(Martin Scorsese) 감독의 지휘아래 상처 입은 영혼의 어설픈 영웅심을 그린 미국영화 “택시 드라이버(Taxi Driver)라는 영화에서 열연한 조디 포스터(Jodie Foster), 로버트 드 니로(Robert De Niro), 하비 카이텔(Harvey Keitel) 등은 일약 스타대열에 오르게 된다. 힝클리는 이러한 영화배우 조디 포스터에 대한 집착을 시작하였다. 힝클리는 1980년까지 조디 포스터가 다녔던 예일대학에서 스토킹을 하였다. 힝클리는 당시 당선되지 얼마 되지 않은 레이건 대통령을 암살하면 조디 포스터의 관심을 끌 수 있다는 무모한 착각 속에 범행을 계획하였던 것이다.

## (2) 범행수법

사건이 발생하기 몇 달 전인 1980년 10월 9일 힝클리는 테네시주의 내쉬빌 공항에서 총기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감지되어 체포되었지만 벌금형을 받고 풀려나게 되었다. 며칠 후 1980년 10월 13일에 텍사스에 있는 로키라는 한 전당포에서 22구경 리벌버 권총 2정을 구입하였다. 힝클리는 범행을 하기 전부터 백악관으로부터 약 1.5km 떨어진 파크센트럴 호텔에 투숙하여 레이건 대통령의 동정을 지속적으로 살폈고, 1981년 3월 30일 사건 당일에는 조간신문인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힐튼호텔에서의 대통령 행사일정’이 발표되자 범행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힝클리는 레이건 대통령을 기다리는 기자들 속에 숨어 들어갔다. 마침내 레이건 대통령이 전용 출입구로 나오고 있는 것을 목격한 힝클리는 소지하고 있던 22권총으로 3m 거리의 담벼락에서 레이건 대통령을 향하여 6발을 2초 동안에 발사하였다.

총성이 나자 경호실장 제리파는 곧바로 레이건 대통령을 대기 중이던 리무진에 밀어 넣고 이동시켰다. 동시에 경호원 메카시는 총성이 들리는 사선 방향으로 몸을 벌려 레이건 대통령을 향하던 총탄을 온몸으로 가로막았다. 그리고 다른 경호원들이 힝클리의 총을 빼앗고 체포하였다.

## 3) 경호분석

### (1) 사건의 문제점

이 사건은 총성 이후 10초 만에 경호요원들이 레이건 대통령을 사건 현장에서 즉시 대피시키는 신속성을 발휘한 성공사례로 평가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나타났다.

#### ① 행사장 외곽 취재구역 근무요원의 방심

경호요원들은 행사장 내에 있는 사람들과 출입하는 사람들의 신원확인인 철저히 했지만

행사장 외곽, 연도에 있는 불특정 다수 인원에게는 철저한 검문검색의 어려움이 있다.

사고현장은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통제선을 설치하고 보도진들에게 취재구역으로 제공된 만큼 근무요원을 투입하고 이상인원의 접근을 배제하는 동시 은밀감시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백악관 공보실에 의하여 정식으로 취재구역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간이취재 구역으로 근무자의 관심이 소홀하였던 것이다. 행사장 외에도 행사장 내와 같이 정식으로 취재구역으로 지정해서 취재진에 대하여 신원확인 후 취재허가카드가 발부되었다면 취재 기자들 사이에 섞여 있는 헝클리를 사전에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

#### ② 수시 사용 행사장에 대한 안일한 자세

힐튼호텔로 이동행차로는 다소 안전하고 백악관과도 근접해 있어 고위 관리들이 빈번하게 방문을 하던 곳이다. 그래서 경호원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경호의 안전성이 확보되고 위험레벨이 낮은 장소로 분류하고 있음으로서 일종의 습관적, 관습적인 매너리즘적 사고에 젖어 있었다.

행사당일에도 경호업무를 수행할 담당요원들의 임무브리핑 과정을 충분히 실시하지 않았고 정·첩보사항을 확인하는 작업을 무시했다는 결과가 확인됐다. 힐튼호텔의 위치상 워싱턴 D.C지역 내 대통령 경호환경이 그 외의 어떤 지역보다 더 안전하다는 사고에 젖어 있었다. 레이건 대통령의 힐튼호텔 방문이 잦았기 때문에 일상적인 업무로 간주하여 원칙에 입각한 보안조치를 엄격하게 실시하지 않았다.

#### ③ 무선교신 혼란과 무선보안 누설위험

수행과장 제리파가 레이건대통령을 사건현장에서 신속히 대피시켜 백악관으로 가는 도중에 레이건대통령이 부상당한 것을 확인하고 조지워싱턴 대학병원으로 행차로 변경을 운전요원에게 명령하였다. 이에 모터케이드 전방 파이롯트카에 탑승한 경찰요원에게 조지 워싱턴 병원으로 이동코스 변경을 지시하려고 하지만 사고현장수습 경찰들의 무선교신의 폭주로 인하여 교신불통과 피경호인 부상사실 통보로 인한 보안누설 등의 이유로 경찰에스코트 없이 선도차량과 피경호인 리무진 차량만이 모터케이드에서 이탈되어 조지 워싱턴 병원으로 이동하고 나머지 경찰차량은 백악관으로 향함으로써 앰블런스나 경찰 교통통제 차량없이 차선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병원으로 이동하는 위험한 상황이 일어났다.

#### ④ 의무기록철 비치 미비

레이건 대통령이 부상을 입은 채 병원으로 들어와 응급조치를 시작할 때 혈액형을 알기 위해 검사가 필요했지만 수행과장 제리파가 레이건 대통령의 혈액형을 미리 알고 있어서 응

급치료를 하는데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다.

응급상황에선 대통령의 병력기록이 응급치료를 필수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휴대, 비치하지 않았다. 응급상황을 대비하여 병력기록을 근접 경호요원이 항상 휴대하거나 피경호인 차량에 비치하여야 한다.

⑤ 위해인물 프로파일링 미비

헝클리는 1980년 10월 9일 테네시주 내쉬빌 국제공항에서 권총 3정을 휴대한 채 탑승을 기도하다가 체포·구금된 사례가 있음에도 위험인물로 분류하지 않았던 오류를 범함으로서 레이건 저격사고로 연결되었던 것이다.

당시 카터대통령은 내쉬빌에 선거 유세차 체재 중이었고 레이건대통령 후보 역시 내쉬빌로 가기위하여 준비하던 중 행차를 취소한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인물 파일에 등재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지역경찰 및 FBI 등에서 보안관리를 하고, 대통령 등 국가요인 경호시 경호실에 자료를 제공하는 정보교류 협력제도를 강화하도록 하였다고 본다.

⑥ 병원 및 응급실 사전 미확보

응급상황에 따른 사전 근무자에 의한 신속한 병원 응급실 안전확보가 이루어 지지 않은 상황에서 병원 장악과 환자 및 병원 이용객 통제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응급실 도착시 레이건 대통령이 부상상태에서 도보로 입실되었다는 것은 경호의 기본원칙이 무시되었던 사례이다.

(2) 사건의 결과 및 평가

사건 당시 비밀경호대 경호원들은 1963년 케네디 대통령 암살 당시와는 대조적으로 민첩하게 대응하였는데 그 당시 경호원들의 즉각 조치 행동을 보면 다음과 같다(Melanson, 1988, ①~⑦은 사건종료 후 비밀경호국에서 자체 분석한 결과

- ① 총성과 동시에 제리파 수행과장은 대통령을 차량 뒷좌석으로 밀어 넣으며 그 위를 자신의 몸으로 덮었다.
- ② 근무조장인 샤텍 경호원은 제리파와 대통령을 동시에 떠밀며 차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기사에게 현장 이탈을 지시.
- ③ 동시에 팀 메카시는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총성이 나는 쪽으로 사지를 활짝 펼쳤다.
- ④ 대통령 차량은 최초 저격 총성 이후 10초 만에 현장을 이탈했고 3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다.
- ⑤ 현장에 남은 경호원들은 권총과 우지기관총을 꺼내 들고 제2의 공격에 대비하였다.

- ⑥ 이러한 와중에서도 경호원들과 경찰은 단 한발도 총을 쏘지 않았다.
- ⑦ 저격 전 힝클리가 총을 빼는 것을 미리 본 경호원은 없었다(양재열, 1995).

이 사건에서 현장 근접요원들이 레이건 대통령을 총성과 동시에 즉각 대피시켜 민첩하게 대응한 부분에 있어서는 1963년 케네디대통령 암살 사건과 비교해 볼 때 경호원들의 행동이 상당히 전문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의 문제점들을 볼 때 경호는 한 순간의 방심으로 인하여 치명적인 사고로 연결되며 국가안위에 불안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여야겠다. 위협인물 등재, 병력기록철 등은 평시에도 경호는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점검하여야 한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대통령 부상사실에 대한 보안유지와 병원응급실 준비에 대한 연락망 구성, 앰블런스가 아닌 리무진 이동에 따른 차선확보 어려움 등을 초래하였다. 결국 이러한 결과들은 부단한 평시훈련이 위기시에 그대로 노정된다는 점을 볼 때 경호연수원 혹은 경호 훈련장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범인 힝클리가 치밀한 계획 하에 공동범행을 저지르기 보다는 단독으로 우발적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실수들이 다소 치명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지만 뉴테러리즘 양상을 보이는 소프트 테러방식이었다면 2차 병원 이동로상, 혹은 병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응급실 도착시 기습공격이 감행되었다면 심각한 사태로 비약될 수 있음을 예견하였다.

## 2. 박정희대통령 암살미수사건 분석

###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1974년 8월 15일 10시 23분경 서울 장충동 소재 국립극장에서 거행된 29주년 8.15광복절 기념식 행사장에서 당시 23세의 제일동포 2세 문세광에 의해 박정희대통령을 시해하려다 실패하고 육영수여사를 저격, 우측두부 총상으로 서울대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당일 19시경 서거한 사건이다.

박정희대통령과 육영수여사는 1974년 8월 15일 국립극장에 도착하여 제29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박정희대통령은 연설을 시작하였고 박정희대통령이 연설대에서 연설을 하고 있는 틈을 타서 문세광은 좌석에서 일어나 연단을 향해 달려가면서 연설중인 박정희대통령을 향해 2탄을 발사하였지만 연설대에 맞았다. 그 후로 3탄은 불발, 문세광은 연단에 박대통령이 보이지 않자 단상에 앉아있는 육영수여사를 향해 발사하여 우측두부에 명중을 하였다. 5탄을 발사 할 때 누군가 발을 걸어 앞으로 넘어질 뻔 했으며 5탄 발사 후 붙잡혔다.

문세광이 4번째 발사한 총탄에 우측 두부를 맞은 육영수 여사는 서울대 병원으로 후송 후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서거하였다.

## 2) 사건의 배경

### (1) 범행동기

이 사건은 냉전시대의 잔재로 볼 수 있다. 문세광은 재일조총련 대판부 생야 서지부 정치 부장이었으며 북괴공작원인 김호룡에 포섭되어 북한으로부터 1973년 9월 중순경 박정희대통령 시해지령을 받고 오사카항에 정박 중인 북괴공작선 만경봉호에 승선하여 사상교육과 범행의 성공을 위한 교양교육을 받았고 1974년 8월 6일 입국하여 15일 거행했다.

### (2) 범행수법

문세광은 경호관들에 의한 아무런 경호조치도 받음 없이 국립극장에 도착하여 남측 출입문(중앙의 측면)을 통해 식당 내 침입, 식당내 B열 214호 좌석에 앉은 후 연설중인 박대통령을 저격할 기회를 노렸다. 대통령의 연설을 경청하고 있는 사이 좌석에 앉은 채로 허리춤에 은닉한 권총을 뽑으려다가 방아쇠를 잘못 건드려 1탄 오발, 자신의 좌측대퇴부가 관통상을 입었다. 그러나 즉시 일어나 6초 동안 연단을 향해 달려가면서 약 20.9m 거리에서 연설중인 박대통령을 향해 제2탄을 발사(연설대 좌측에 맞음)했고 제3탄은 불발이었다. 제4탄은 약 18.2m 전방 단상에 앉아있는 육영수여사를 향해 발사하여 우측두부에 명중되었다. 제5탄은 관객이 발을 걸어 넘어지는 순간 발사되면서 연단 뒤 벽에 계양되어 있는 국기에 맞았다. 5탄 발사 후 문세광이 제압되었다.

## 3) 경호분석

### (1) 사건의 문제점

#### ① 근무집중도 결여

8.15 사건당시 경호처 경호선발과 3개과가 대기·본관·휴무 순의 근무주기로 운용하였다. 경호1과는 지하철개통식 행사대기를, 경호2과는 전일 본관 당직근무 후에 광복절기념식 행사를 담당하고 경호3과는 본관 당직근무를 담당하였다. 이날 경호선발과는 지하철개통식과 광복절행사와 병행하여 사전안전 근무유지와 함께 과중하고 중복된 임무로 인하여, 근무자들의 피로감이 증대됨에 따라 근무집중도가 결여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② 소극적인 경호조치

행사장 입장시 문세광은 검은색 외제차량 뒷자석에 앉아 고위층 행세를 하며 아무런 경호 조치 없이 정문을 통과하였다. 차량전면에 승차입장카드가 부착된 차량만 입장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세광이 탄 차는 승차입장카드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이었고 신원도 확인되지 않았었다. 하지만 정문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차량을 정차시켜 검문을 할 경우 행사참석 차량이 정체되어 혼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의식 하에 질서유지차원의 형식적 근무와 고급·대형차량 탑승자 및 외국인에 대한 경외감으로 소극적인 경호를 실시하였다. 일본어를 쓰고 고위층 차림으로 위장한 문세광이 외국인이라는 의식에서 의사소통이 되지 않자 아무런 제지도 가하지 않고 행사장내에 입장을 허용하여 불법입장을 방치한 것은 근무자의 기본적인 임무를 저버린 중대한 과실이라고 분석된다. 외국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관대함과 사전 승인받지 않은 차량을 진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기능을 갖지 못한 점에서 평시 부단한 교육훈련의 미흡으로 인한 소극적 경호조치라고 할 수 있다.

③ 초기대응 미흡에 따른 적극적 임무수행 의식결여

행사장내에서 문세광이 단상에서 연설중인 박정희대통령을 저격하고자 복도를 이동하는 상황에서도 위기상황에 대한 즉각적으로 상황전파가 이루어지지 않아 좌석근무자 및 행사장 내부근접요원들이 우발상황 발생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여 단상가까이 이동하도록 방치하였다. 문세광은 범행을 결심하고 허리춤의 총을 옮기다 1탄을 오발하여 좌측대퇴부에 관통상을 입고 당황한 나머지 복도로 나오면서 단상에서 연설 중이던 박정희대통령을 향해 2탄을 발사하였다. 최초 총성발생시 상황전파가 없었으며 문세광이 총을 들고 복도를 따라 나오는 과정에서 좌석근무자들의 아무런 제지 및 통제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현장근무자들의 초기대응 미흡으로 평소 근무자들의 부단한 교육훈련의 부족과 동시에 사명감이 약화되어 적극적인 임무수행의식이 결여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④ 비상대피상황 대비자세 미흡

내부근무자는 행사장 내에서 첫 총성이 발생 시 자리에서 일어나 확인을 하고 출입근무자는 출입자 통제 및 우발상황대비 통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기타 내곽근무자는 비상대피소 점검을 하여 피경호인이 무사히 대피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또한 운전요원은 차량에 정위치하여 필요시 즉각 현장을 이탈할 수 있도록 대기하여야 한다. 역감시 수행근무자는 역조명 스위치를 조작하여 범인 더 이상 저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했고, 근접근무자는 몸을 날려 체위확장으로 VIP의 노출방향 차단 후 대적하여 범인을 제압했어야 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첫 총성부터 즉각적으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여 전파노력이 미흡하여 비상상황에

따른 대비 자세가 미흡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⑤ 우발상황에 대한 위협의식 결여

문세광의 좌석 바로 옆에는 경찰근무자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문세광이 1탄을 불발하였을 때 즉각 인지하고 육성으로 경고를 하여 모든 근무자들에게 알렸거나, 문세광이 통로로 못 나가도록 제지하였더라면 위해상황은 미수상황으로 끝났을 가능성이 높았다. 문세광이 총을 쏜 지점의 좌우측은 모두 경찰 근무자가 앉아 있었던 지근지점이었기 때문에 총을 본 경찰 근무자가 문세광을 밀어서 넘어뜨리거나, 정조준을 할 수 없도록 몸을 건드리기만 했더라도 육영수여사는 머리에 총을 맞지 않았을 것이고 즉시 제압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우발상황에 대처하지 못한 것은 경찰근무자들의 기본적인 행사교육이나 우발상황에 대한 위협의식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있겠다.

⑥ 중앙정보부의 정보활동부재

문세광은 재일조총련 대판부 생야 서지부 정치부장이며 북괴공장원인 김호룡에 포섭되어 1973년 9월 중순경 박정희대통령 시해지령을 받고 오사카항에 정박 중인 북괴공작선 만경봉호에 승선하여 사상교육과 범행의 성공을 위한 교양교육을 받아왔다. 그런데도 오사카지부에 근무하는 중앙정보부 직원들은 만경봉호에 출입하는 인적사항에 대해 전혀 체크를 하지 않았다. 만경봉호에 출입하는 인원을 파악하여 문세광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수집하여 계속 추적했어야 했다. 오사카지부에서 심상치 않은 부분을 추적하여 파악하였더라면 이 사건은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⑦ 김포세관의 업무소홀

문세광은 사건발생 9일전 KAL202편으로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하였다. 그는 일제 산요 트랜지스터라디오 속에 권총 1정과 실탄 5발을 자신의 여행용 트렁크에 은닉한 채 가짜여권을 가지고 김포세관을 무사히 통과했다. 일본공항과 김포공항에서 2차례나 보안검색을 받고 X-RAY기를 통과했지만 아무런 제지가 없었던 것은 당시 검색요원의 무사안일과 타성에 젖은 근무와 사전교육의 미실시, 책임간부의 감독소홀과 사전정보 입수의 미흡을 통해 세관검색이 얼마나 형식적이고 허술하였는지를 알 수 있다.

⑧ 경찰 외사업무미흡

문세광은 오사카 산트라벨 여행사를 통해 조선히otel 1030호실에 8월 6일부터 8월 15일까지 10일 동안 장기 체류를 했었다. 그 당시 조선히otel은 특급호텔로서 경찰외사과에서 직원이



상주하고 있었다. 경찰들의 임무는 장기투숙 외국인, 반한 인물에 대한 추적과 감시이지만 문세광에 의해서는 전혀 체크가 되어있지 않았다. 문세광의 여권에는 일본국적에 직업은 회사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리고 문세광은 초조함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 청평 등지를 배회하면서 관광을 겸한 음주와 엽색행각으로 시간을 보냈었다. 직업은 회사원으로 되어있었지만 일정한 일없이 배회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체류기간동안 문세광을 추적하면서 동향을 감시하는 업무를 철저히 하였더라면 의심스러운 면을 발견하고 신고 또는 취조를 하였더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 (2) 사건의 결과 및 평가

### ① 미흡한 경호조치

우발사태 시에는 무엇보다도 피경호인의 신속한 현장이탈조치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문세광의 박정희대통령 저격사건은 가장 중요한 경호원칙이 무시된 결과로 일어난 대표적 실패사례로 꼽힌다. 경호의 최상의 목표는 경호대상자의 보호이다. 이러한 지상과제를 이루기 위해 위해기도를 무력화시키는 사전 예방경호활동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사전 각종 예방적 경호안전활동 후 행사실시간 위해기도가 일어나면 경호대상자 보호를 위해서는 가장 우선시 이루어져야 하는 활동이 피경호인의 신속한 대피활동이 공격자 제압, 범인 검거활동보다 우선 되어야 한다.

그러나 문세광 저격사건 발생시 가장 결정적 실패사례가 경호대상자를 신속히 보호하여 대피시키는 노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위해자의 공격에 대응하는데 경호력이 집중되고 단상 뒤 비상근무 중이던 근접요원들의 충성에 대한 위협인식판단이 지연되었다는데 그 심각성이 노정되었다고 분석한다. 마지막 5탄까지의 약 8초간의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박종규경호실장의 근접경호요원의 즉각적 상황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경호의 기본적 개념과 원칙이 완전히 무시된 결과로 인한 사고였다고 볼 수 있다.

그 때 당시 문세광은 공이를 제쳐놓은 상태에서 권총을 꺼내는 순간 오발한 후에도 나머지 4발을 단계별로 발사하는데 이동 간에 표적상실(박정희대통령의 연단 뒤에 었드린 순간)로 단상 우측면에 착석한 육영수여사에게로 표적 이동한 것이다. 시간적으로 분석해 볼 때 영부인에 대한 보호(Cover)와 함께 대피(Evacuate) 조치가 있었다면 육영수여사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었다고 분석된다. 당시 재판기록을 살펴보면, “2탄을 쏘고 난 후 단상에 있는 연설 중인 대통령이라는 표적상실로(문세광의 2탄 총성 후 박대통령은 방탄연대 뒤로 은폐) 총구를 돌려 육영수여사를 저격했다”(8·15 문세광사건 재판기록). 즉 이때 표적(영부인)을 신속히 보호 후 이동시켰다면 안전이 확보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결국 경호의 기본원칙인 경고, 방호, 대피의 SCE원칙이 완전 무시된 결과의 전형적 사례라고 판단된다.

② 우발상황발생시 대처미비

이 사건에서 육영수여사가 맞은 제4탄은 범인의 초탄발사 후부터 7초가 소요됐다. 순간을 위해 싸우는 경호원의 입장에서 7초란 상당히 긴 시간이다. 신속한 방호 및 대피 조치가 있었다면 육영수여사도 피격당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위태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경호대상자가 장시간 노출 및 현장에 방치되는 것은 절대 경호원칙상 있을 수 없는 사례이다.

8·15사건당시 단상에 위치한 경호대상자의 즉각적 방호 및 대피 조치가 미비한 상황을 분석하면 경호원으로서의 경호실장(당시 박종규)의 태도에 대해 문제점이 드러났다: “첫째, 경호실장의 태도이다. 범인이 총을 들고 단상을 향해 저격할 당시 대응사격자세를 취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우선 몸으로라도 막을 수 있는 자세를 취했어야 했다는 사실이다. 물론 경호실장이 총을 들고 단상 앞으로 나올 땐 대통령도 순간적으로 연대 뒤로 피했지만 경호실장은 당연히 대통령 앞으로 뛰어나와 방호자세를 취해야 했다.”

비상상황 발생시에는 성공적인 임무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피경호인을 보호하기 위한 우발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그 중에서도 비상대피수단(비상대피소, 비상대피로, 비상대기 차량위치)을 사전점검하고, 전 근무자가 숙지한 상태에서 우발사태발생 시 일사불란하게 피경호인을 대피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수행 방법이다.

### 3. 이스라엘 라빈수상 암살사건분석

####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1995년 11월 4일 토요일 22시 이스라엘 텔아비브 시청 앞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이스라엘 텔아비브시청 앞에서 10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라빈수상이 중동평화정착 계획지지 군중대회를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려는 순간, 범인 이갈 아미르(당시 25세)가 약 2~3m 떨어진 곳에서 베레타 9밀리 권총으로 DUM-DUM탄을 발사하였다. 제1탄이 라빈수상의 등에 명중되었으며 제2탄은 수상 뒤에서 수행 중이던 로빈 경호원이 총성직후 수상을 차안으로 밀어 넣는 순간 어깨 부분에 맞았다. 라빈수상은 곧바로 텔아비브 이칠로프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피격 1시간 만에 사망한 사건이다.

## 2) 사건 배경

### (1) 범행동기

범인 이갈 아미르는 텔아비브의 유대인 신학교인 바르 일란대에서 법학을 전공하였고 육군 정예부대인 골란 여단소속이며 보안군으로 일한 경력이 있었고 권총소지를 허가받았었다. 범인은 또한 오슬로협정 반대학생시위를 주도하였다. 범인은 라빈정부 출범이후 점령지 내의 유대인 정착촌 건설동결 및 점령지 반환 등 대아랍 유희정책 지속추진으로 불만이 고조되었으며 가자·예리코 지역에 대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실시됨은 물론 요르단강 서안지역까지 팔레스타인 측에 이관시키기로 합의한 것에 대한 심한 반발로 인해 라빈수상의 암살만이 평화 협정을 저지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확신하였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2단계 자치확대 협정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현실화되었고 특히 서안지역의 이스라엘에 약 12만 명의 거취에 대해 정착민과 팔레스타인인들 모두가 불만을 나타내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들의 테러공격위협은 물론 이스라엘 우익세력들로부터도 심각한 위협을 받아왔었다.

### (2) 범행수법

범인은 그간 여러 번의 저격기회를 노렸으나 기회를 잡지 못하던 중 1995년 11월 4일 토요일 밤에 라빈수상이 텔아비브 시청 앞에서 중동평화를 위한 평화협상 대규모 군중집회 개최소식을 입수하여 암살계획을 세웠다. 범인은 사건 당일날 극우세력으로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 청바지와 티셔츠로 위장하고 권총을 청바지에 넣고 행사가 열리는 시청 앞으로 이동하였다. 출입문 앞에서 검문을 받은 후에 입장이 가능하지만 범인은 전혀 경호제지 없이 출입하여 제한구역 안까지 진입하여 주변 경호경찰들과 담소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친분을 조성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 라빈수상이 차량에 도착할 때까지 근접경호원들로부터 전혀 의심을 받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경호대상자가 이동시에 통상 4~5명의 수행경호원이 경호하며 경호대상자 주변차량에는 1~2명의 근접요원이 대기하게 되어있었지만 사건 당시 라빈수상 근접에는 2명의 경호원만이 수상 뒤에서 수행하였다. 범인은 아무런 장애 없이 라빈수상과의 2~3m 거리에서 3발을 발사하여 제1탄은 라빈수상의 등에 명중되었고 제2탄은 수상 뒤에서 수행하던 경호원이 수상을 차안으로 밀어 넣는 순간 어깨부분에 맞았다.

### 3) 경호분석

#### (1) 사건의 문제점

이 사건은 평소의 요인경호임무를 망각하여 수상경호를 소홀히 한 결과 범인은 아무런 장애 없이 저격대상자에게 접근할 수 있었고 수상을 손쉽게 암살한 대표적인 경호실패사례로 평가된다.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 ① 행사장출입 검문검색 소홀

범인 이갈 아미르가 행사장에 접근할 당시 경호원들은 범인을 방탄차 운전요원으로 임의 판단하여 검문검색을 실시하지 않았다. 사건현장에서도 행사장 외곽을 계속 배회하였으나 단 한번도 신원확인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제한구역까지 쉽게 진입하였다. 라빈수상의 승차 지점 5m까지 아무런 제지 없이 접근이 가능할 정도로 비표확인파 통제가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 ② 경호대상자 근접경호경시

다중군중 행사시에 무단 접근자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원거리 격리 조치하여 경계를 강화해야 하지만 경호원들이 행사장에 있는 참석자들의 안전여부를 육안으로 식별하는 방식의 경호기법을 채택하였다. 근접 경호요원들이 전방경계에 치중하여 후방경계가 허술한 틈을 타 범인의 접근이 가능토록한 결과 근접 수행경호원이 확실한 자기책임 방어구역도 없이 허술한 경호조치를 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

##### ③ 정·첩보활동 부재

라빈수상이 이스라엘의 정착촌을 철수하고 PLO 및 요르단과 협정을 체결하여 극우세력으로부터 강한 폭력시위와 라빈 암살설이 국민들 사이에 떠돌았지만 이를 가볍게 여기고 정·첩보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④ 응급조치 미흡

라빈수상이 저격을 당한 후 사건현장에서 이탈하여 병원으로 후송되는 과정에서 약 4분정도가 지체되는 등 비상대책이 허술하였다. 라빈수상이 병원으로 후송될 당시 병원측에 연락하여 응급상황을 알리려고 했지만 응급조치연락망이 가동되지 않았고 이는 사전 병원 응급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았음을 뜻한다.

## (2) 사건의 결과 및 평가

이 사건에서는 경호요원의 허술한 근무태도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행사장은 사전검색지역으로 구분하여 모든 참석자는 검문검색을 받아야 했다. 사전에 행사계획을 수립하여 직접 현장에서 취약요소를 파악하고 경호계획을 수립하여 우발사태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한다. 경호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사전에 충분한 합동훈련이 필요하며 경호대상자 차량과 마찬가지로 경호 차량도 동일한 준비태세를 유지하여 위해세력의 다단계 공격에 대비토록 하는 것이다.

사건 당시 라빈수상의 근접경호요원은 2명에 불과하였다. 근접경호요원 수를 늘려 도보대형을 강화하여 요인보호 및 대피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 또한 도보대형의 책임자는 비상시 전체지휘 및 취약요소를 보강토록 하여 비상시 긴급 대피할 수 있어야 하며 위장 모터케이트를 활용하여 행사장 도착, 출발시에 대기중인 암살자에 대한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한 것이다.

총상시의 응급조치는 결정적으로 경호대상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비상시에 경호대상자 차량과 함께 현장을 이탈할 수 있는 비상대책을 강구하고 행사장 최고병원을 선정하여 사전점검하고 비상연락망 담당 의료진 현황과 경호대상자 혈액과 입원실 등의 응급시스템을 확인하고 이를 행사에 임하는 전 요원이 숙지하여야 한다. 병원 응급실을 사전 점검하여 우발사태에 대한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최근거리 이동로를 준비하고 숙지토록 하여 긴급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해야 했는데 수상의 사망으로 기본적인 경호기법과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 4. 소결

위의 3가지 암살사건사례에서 요인 경호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호기법과 경호원칙의 준수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깨우고 있다.

미국 레이건대통령 저격사건은 당시 총성 이후 10초 만에 경호요원들이 레이건대통령을 사건 현장에서 즉시 대피시키는 신속성을 발휘한 성공사례로 분석되고 1963년 케네디대통령 암살사건과 비교해 볼 때 경호원들의 행동이 상당히 전문화된 것으로 평가되어 경호학의 경호분석적 측면에서 주요 모델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사전예방경호와 보안조치측면에 선 문제를 드러내었고 선발경호원의 정·첩보활동, 보안활동과 안전확보 등의 임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범인을 위협인물로 분류 및 등재하지 않았던 오류에서 요시찰 인물에 대한 경찰 및 경호기관 등에서의 위해인물 보안관리가 허술했음이 지적될 수

있다. 대통령 부상 후 병원으로의 이동과정에서 드러난 교통 및 통신체계문제는 부단한 경호훈련과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보여 주고 있다.

한국의 박정희대통령 저격사건은 비록 대통령은 암살되지 않았지만 영부인이 사망한 사건에서 경호실패사례로 평가되어 경호기관과 학교에서 완벽한 경호실무를 위한 연구에서 주요한 모델로 되고 있다.

범인의 아무런 경호조치없는 정문통과와 행사장 입장, 상황발생시 적극적인 임무수행의식 결여와 비상상황에 따른 대비자세의 미흡, 우발상황에 대한 위협의식의 결여 및 정보기관의 정보활동부재 등은 경호원칙준수의 총체적 부실과 부단한 교육훈련부족의 결과로 평가된다. 실패사례로 인해 끊임없는 전문적·체계적이고 세밀한 경호교육훈련이 실시되어 경호기법의 발전과 경호원칙의 숙련이 이뤄진다.

이스라엘의 라빈수상 암살사건도 경호실패사례로 평가된다.

범인은 수차에 걸쳐 암살계획을 세웠지만 한 번도 경찰이나 경호당국에 의해 조치되지 않았고 특히 사건당일 범인은 행사장출입에 전혀 경호제재를 받지 않아 저격을 성공시킨 것이다. 즉 행사장출입 검문검색의 소홀과 수상에 대한 근접경호의 경시로 인한 범인의 저격대상자에 대한 접근수월성, 극우세력으로부터의 라빈암살설에 대한 경찰 및 정보기관의 정·첩보활동의 부재, 긴급상황 발생시 병원후송 응급조치의 미흡 등에서 최소한의 경호기법이나 경호원칙들이 준수되지 않았음이 드러난다. 행사장에 대한 사전예방경호와 보안조치측면에서 문제가 드러났고 범인을 행사장내에 수상과의 지근거리 접근을 가능토록 한 점에서 선발 경호원의 보안활동과 안전확보 등의 임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수상부상시 병원 응급시스템 가동의 불비는 경호원칙의 몰각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라빈암살사건은 단적으로 이스라엘 국가 요인경호의 총체적 부실과 경호실무상 원시적 경호수준임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부단한 교육훈련과 전문적·체계적인 경호훈련이 이뤄져야 하겠고 경호선진국 특히 미국의 국가원수에 대한 경호기법과 경호원칙들을 학습하고 연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3개의 주요 암살사건사례를 경호분석적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이 사건들은 경호학 연구에서 사례분석 측면에서 큰 교훈을 남기고 있으며, 여러 경호기관에서 교육훈련시 활용되고 있는 소재들이다. 한국에서도 대통령실경호처는 물론이고, 전국 경호관련학과에서 '경호분석학', '경호실무', '경호방법론' 등의 교과목에 주요한 모델로 다루어지고 있다.

경호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호기법은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더불어 정치·사회·문화와의 제반관계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정치적 제반 관계는 그 자체로 경호환경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경호환경을 형성·변경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호학에서 경호분석적 측면에서 주요 모델로 다루어지고 있는 이 사건을 경호기법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재평가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경호의 특성상 위태상황은 예정되어 있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는 그 규모를 파악하기도 힘들다. 이러한 경호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방법적인 요소가 경호기법과 경호원칙이다. 일반원칙과 특별원칙, 자연방벽효과의 원리, 주의력효과와 대응효과의 원리, 근접경호기법, 우발상황 발생 시 SCE원칙, 추수거리확보의 원리, 체위확장의 원칙 등 많은 경호기법들이 있으므로 경호기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경호운영이 적극적으로 요구된다.

테러는 예측할 수 없는 속성상 관련 첩보와 정보수집·분석이 중요하다. 대테러 경호활동이 테러에 대한 대응과 사후처리에 완벽함을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테러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는 치밀한 사전대책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테러리스트나 테러조직에 대한 정보수집을 통해 테러리스트의 사전 검거, 테러조직에 대한 자금과 무기지원 억제, 테러 네트워크 차단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정·첩보 수집에 따라 단계별 테러경보체제를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경호 운용에 효율적일 것이다.

경호는 한 순간의 방심으로 인하여 치명적인 사고로 연결되며 국가 안위에 불안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위험인물 등재, 병력기록철 등은 평시에도 경호는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점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평시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위해 경호연수원 혹은 경호 훈련장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국의 경우 현재 대통령 경호를 위한 대통령실 경호처의 임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반면 3부 요인, 헌법재판소장,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 국가 주요 인사에 대한 공경호는 체계적으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대책으로 2006년 김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요인경호법안’이 제출된 바 있으나 계류 중 시효경과로 폐지된 바 있다. 이 법안은 국제적인 테러의 급증과 사회경제적인 문제에 따른 정치지도자 등 사회주요인사에 대한 테러위해요인이 증대하고, 테러수법이 날로 흉포화·지능화 하는 현실에 비추어 정당대표자, 대통령선거후보자 등 국가 주요 요인이 보다 체계적인 경호를 받을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국가 요인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테러방지법’이나 ‘요인경호법’ 등 경찰 및 경호기관의 체계적인 경호 프로그램이 법·제도화되어 시급히 확립·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경찰청. (2008), 『2008년 경찰백서』.
- 권현아. (2003), 『미국 대통령 부인의 의생활에 관한 연구 : 대통령 재임기간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두현. (1996), 『경호학개론』. 쟁기.
- \_\_\_\_\_. (2004), 『경호학개론』. 백산출판사.
- 남길현. (2002), “사이버 테러와 국가안보”, 『국방연구』, 제45권 제11호, 국방대학교.
- 박세일. (2003), 『대통령의 성공조건 I : 역할·권한·책임』. (재)동아시아 연구원.
- 서상열. (1998), 『세계 요인테러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진우. (2005), 『한국 대통령의 리더십에 관한 규범적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양재열. (1995), 『경호의 기본적 이론에 관한 연구: 국가원수 경호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염상국. (1997), 『요인경호시 근접경호원에게 요구되는 행동이론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중선. (1995), 『한권으로 보는 미국사 100장면』. 가람기획.
- 이대성. (2004), 『한국의 테러에 대한 인식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두석. (2008), “라빈수상 위해사건 분석을 통한 경호적 대응방안”. 『한국경호경비학회지』, 15: 211-232.
- 이상철. (1997), “경호기법에 입각한 경호무도 지도방법에 대한 고찰”, 『무도연구지』, 제8집 1호, 용인대학교.
- \_\_\_\_\_. (2001), 『경호방법론』. 홍경.
- \_\_\_\_\_. (2008), 『경호현장운용론』. 진영사.
- 이재진. (2001), 『국가위기관리를 위한 요인경호시스템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정호. (2008), “사이버 테러리즘의 변천 방향과 한국의 대응”, 2008 국방안보학술회의자료.
- 최진태. (2006), 『알카에다와 국제테러 조직』. 대영문화사.
- \_\_\_\_\_. (2006), 『테러리즘의 이론과 실제』. 대영문화사.
- 허 흥. (1998), 『요인경호에 관한 연구 - 4개국 경호제도와 위해사례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llinso, Robert E. (1993), “Grobal Diaster”, A Division of Simon & Schuster International Group Asia.
- Baber James & Pastan Amy. (1998), Smithsonian Presidents & First Ladies. New York: Dk Publishing.



- CID. (1978), Protection service.
- Secret Service (1990), 팜플렛 Moments in History.
- Clinton Hillary R. (1996), The Smithsonian Book of the First Ladies. New York: Henry Holt & Company.
- Melanson, Philip (1988), The Politics of Protection-The U.S. Secret Service in the Terrorist Age.
- Ronczkowski, Michael R. (2004), Terrorism and Organized Hate Crime: Intelligence Gathering, Analysis, and Investigations. New York: CRC Press.
- Wardlaw, Grant (1994), Political Terrorism: Theory and Counter-Measure, 3rd e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ilkinson, Paul (1986), Terrorism and the Liberal State, 2nd.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네이버 용어사전(<http://terms.naver.com>)

두산백과사전 EnCyber &EnCyber.com(<http://www.encyber.com>)

사이버경찰청(<http://www.police.go.kr>)

위키백과(<http://ko.wikipedia.org>)

## ABSTRACT

### Professionalism raising of the escort which leads an instance analysis

Yu, Hyung-Chang

There are three assassination and treating cases in this thesis introduced as analysis data. They are shooting accidents of the U.S.A's President Reagan (1981.3.30), and the President Park Jeong Hee of South Korea(1974.8.15), assassination of the Prime Minister Lavin of Israel (1995.11.4)

In March 30, 1981, there was an accident where criminal, Hinckley, fired ball cartridges right before the President Reagan got into the car to move to White House after completing the announcement of Hilton Hotel of Washington. As a result, the chest of president was shot and public information secretary and safeguard were wounded. In August ,15, pm 10:23, where the 29th 8.15 independent anniversary event was being celebrated by the people at the National theater in Jangchungdong, Seoul, the criminal Moon Sekwang fired ball cartridges, he failed to assassinate the President Park Jeong Hee of Korea, but shot the First lady Yuk Young Soo. She was wounded right part of head and died.

In November 4, Saturday, pm 22:00 the Prime Minister Lavin had finished the supporting event of Middle Asia's Peace project and was taking on the car when he was killed by the criminal Amir's shooting,

The accidents left very important lesson from the aspect of security analysis and it has been frequently used as a material for the education and training of safeguard organization. In Korea, as well as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national security departments have selected it as an important model for the subjects such as 'Security Analysis, 'Security Practice' and 'Security Methodology'.

In the performance of security duty, security skill is the most important matter. Moreover, it has a close relationship with politics, society and cult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reevaluate the case, which has been treated as a usual model from the aspect of security analysis, beyond its introduction.

Attempted assassination of President Reagan was evaluated as a positive success example because of its rapid response of adjacent guards to evacuate Reagan, who

is a guard target, within 10 seconds after the shot. When comparing it to President Kennedy Assassination of 1963, it was evaluated that guards were significantly specialized. In the study, however, it was possible to found many problems such as carelessness of guard, who is in charge of external area of event place, idle attitude for frequently used event place, confusion of wireless communication, risk of wireless security disclose, insufficient provision of compulsory record file, insufficient profiling of dangerous person and unsecured hospital and first-aid room.

Key Words : Security, Assassination, President Reagan, President Park Jeong Hee, Prime Minster Lavin, Security Analysis, Security Skill